

#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3-3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폐지사유

- 가. 1993. 12. 31자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『국민체육진흥법』 제5조 제1항의 “체육진흥협의회”조직에 대한 규정이 “두어야 한다”는 「강제조항」에서 “둘 수 있다”는 「임의규정」으로 개정되었으며
- 나. 우리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“체육진흥협의회” 구성은 실효성이 없으며, 체육진흥에 대한 중복업무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에 따라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함

## 3. 폐지근거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사항 없음

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3. 4.18 ~ 2013. 5. 8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자치법규 성병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2013. 5.14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